

<p>가 소방직만으로는 대처·예방에 한계가 있어, 도시방재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우선적 확보와 전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한 과제인바,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지난번 국지성 호우로 발생한 수재시 효율적 대처가 어려웠음을 지적하고자 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제3조(과·담당관 등의 설치)》</p> <p>①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의 실장·국장·부장·과장·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▣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3. 전문위원 겸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남중)</p> <p>○ 서울시가 설치하는 대부분의 기관명에서 '시립'이라는 설립주체 중심의 명칭을 이용 시민·내용중심의 명칭으로 변경되고 있어, '서울특별시립박물관'의 기관명을 '서울역사박물관'으로 개칭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이용시민 중심의 명칭 개정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</p> <p>【세부사항】</p> <p>○ 우리 시가 설립 중심 동 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중심으로 일반시민이나 청소년이 직접 체험하는 국내 최초로 도시역사박물관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,</p> <p>○ 역사학계, 관계 전문가 등의 명칭변경은 바람직하다는 견해 등을 고려해 볼 때,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생략</p> <p>6. 심사결과 : 「원안가결」(재석위원 11명, 출석위원 6명 전원일치)</p> <p>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본문 중 "15,340명"을 "15,446명"으로 하고, 같은조제2호 중 "4,874명"을 "4,980명"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</p>	<p>다면,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1항의 정원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</p>
--	---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4장 제11절의 제목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
 제71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
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의 소관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장이 승계한다.

②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소속 공무원은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 설치조례”로 하고, 동조제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,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한다.

②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조례”로 하고, 동조제 제1조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”으로 하며, 제4조제1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를 “서울역사박물관 개관준비위원회”로 하고, 제8조제2항중 “서울특별시립박물관장”을 “서울역사박물관장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제7조 중 “면제하거나”를 “면제하고”로 하고, 동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기념관을 관련단체에 위탁하는 경우(수입이 적어 운영이 적

자인 시설에 한한다)

제2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⑦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때
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최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위원회의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수도조례 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수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, 동조 제5항 본문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, 동항 단서 중 ‘제3항 및 제4항’을 “제3항”으로 하며, 동조제6항 중 “제4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7항 중 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”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“를 ”다음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는 금수공사비의 50%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고,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중 공사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“로 하며, 동조동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연면적 45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물
2.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별표 3」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작은 구경의 인입금수관으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택
3. 공동급수장치를 이용하는 주택 중 전용급